

의안번호	2207726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5. 3. 13.
추계번호	25B047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제7항 (사업의 등록)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u>암모니아</u> , 에탄올, 에틸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7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제7항 (사업의 등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 범위에 추가하고,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이하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추가(안 제24조제7항)
 - 개정안에 따라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 범위에 추가하고,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추가할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 규모(개사)는 2024년말 기준 27개사(현행 대상)에서 3,342개사(개정안에 따른 대상)로 증가함

- 현행: 화주 11개사, 화주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 16개사
- 개정안: 화주 24개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3,318개사

[표 1]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대상 비교(2024년말 기준)

(단위 : 개사)

대량화물 종류	현행 대상		개정안에 따른 대상	
	화주	화주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	화주	공시대상기업집단 ¹⁾ 에 속하는 회사
원유	4	6	4	3,318
제철원료	2	1	2	
액화가스	4	5	4	
발전용석탄 ²⁾	1	5	1	
암모니아	—	—	3	
에탄올	—	—	3	
에틸렌	—	—	10	
합 계 ³⁾	11	16	24	3,318
	27		3,342	

주: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2) 「해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대량화물로 규정

3) 화주 및 화주 소유·지배법인의 경우 2개 이상 대량화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존재하므로 화물종류별 중복된 회사 수를 제거한 수치임

자료: 한국해운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원 자문료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이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등록 신청을 할지 여부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청취대상인 등록 신청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5년 동안 추가재정소요
액을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시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청취제도 도입(199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횟수는 총 1건으로 소요비
용(민간위원 자문료)은 총 130만원으로 파악됨

[표 2]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 등록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시기	심의 대상	참석 현황	소요 비용
2005. 5. 12.	1개사 (액화가스 취급사)	공무원(위원장) 1명, 민간위원 13명	1,300,000원 *민간위원 자문료: 13명 × 100,000원

주: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해상대량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등 사유 발생 시 구성됨
자료: 해양수산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647	dongwaniii@nabo.go.kr